



두엄누리회보 제43호

2007년1월25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친환경농업과 퇴비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지난 9월 친환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재정립 하였고 그간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5종류 이었던 것을 "일반친환경농산물"을 분류에서 제외시켰고,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 시킨 것 등이 있겠다.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관행농업의 개념을 삭제하여 그 차이를 분명히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

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기존 정의 내용에 있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은 관행농업에서도 행해지던 개념으로 친환경농업에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 삭제되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자면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축산분뇨를 비롯한 농가 부산물을 화학재료대신 재활용 하여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 보면 그간 화학비료의 남용과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축산업의 발달로 그대로 버려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축산분뇨를 열심히 처리하고 재활용 해왔던 우리 퇴비 생산업체는 친환경 농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이 확실하다 하겠다.

겉으로는 지원 확대,
안으로는 천대 받는 퇴비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 해인 1998년도부터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포함한 퇴비에 정부보조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였고 그 양은 계속 증가하여 올해는 472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표 1) 부산물비료 및 유기질비료 판매현황 (단위: 천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유기질 비료	130	153	187	236	341
부산물 비료 (퇴비)	1,572 (1,424)	1,928 (1,788)	1,643 (1,514)	2,340 (2,136)	2,300 (2,032)
계	1,702	2,081	1,830	2,360	2,641
정부지원량 (전체 판매량 대비)	500 (29%)	600 (29%)	600 (33%)	650 (28%)	700 (27%)

정부의 노력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퇴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2004년도부터 유박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4년도 8월 농촌진흥청에서 개정 고시된 유기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에 의해 유기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 축산농가(유기사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나오는 축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 기인한다. 유박 등으로 만들어진 유기질 비료도 원래는 2005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만 사용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 개정 고시에서 일반 유기질 비료로 표기된 시행규칙과 달리 일반 유기질 비료와 잠용유박, 대두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등 유박종류와 분리시킴으로서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 포장 퇴비는 유기농산물 자재가 아니며 유박 종류만 사용해야한다고 알려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사업 전량을 유박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유박생산업체가 퇴비보다 유박 비료가 고농도임을 주장하고 퇴비에 비해 소량사용해도 된다는 편리성을 강조함으로 더욱 부채질을 하게 되었다.

사료로 수입되어 비료로 사용되는 유박원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박비료의 원료는 거의 다가 수입원료이며 사료용으로 들어온다.

비료에서 말하는 유기질 비료 유박 종류의 비료는 각 종류마다 그 원료를 혼합이나 변형 없이 그 자체만으로 사용, 보증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박 종류는 전량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그 양이 턱없이 모자라 한 해에도 수십, 수백만 톤씩 수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로 수입되는 원료는 불법사용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대 동물을 통해 배설된 후 소 동물, 미생물을 통해 식물로 흡수되는 자연 생태계 순환 고리를 거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곧

바로 토양 속으로 투입되는 수입 유박 류는 비료라 말하기 보다는 또 다른 질소원의 수입으로 폐기물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농업환경과 우리 국토의 부하 량만 증가시킬 뿐 인 것이다.

사료는 사료대로 수입 되서 들어와 축산분뇨로 쏟아지고 사료로 들어와 비료로 둔갑하여 식물의 영양원이란 명분으로 토양 속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농업환경은 어찌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것들이 정부 보조금을 붙여 농지로 들어간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축산과 관련해 사료 분야에서도 축산 농가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사료로 수입된 유박류가 그대로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것만은 앞장서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료는 사료대로 금액이 올라가고 가축을 통해 배설된 분뇨는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시 개정된 친환경육성법으로 돌아가 진정 법의 정의대로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지고 생산되는 퇴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협약**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06.9.27, 1년후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부령) 제정 (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28일 농림부 자연 순환농업 팀 사무실에서 이상철 자연 순환농업 팀장, 서재호 자연 순환농업 팀 사무관, 농림부 장명철 친환경농업정책과 사무관,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조남성 국장이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

정부가 내놓은 (안) 제2조. 제3조 가축분뇨 퇴비. 액비의 기준을 정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퇴비의 기준) 법 제2조제5호에서 “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 에 적합한 것을 말 한다

1. 충분히 발효되어 가축분뇨 고유의 냄새가 없을 것
2. 식물생육이나 환경보전에 유해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수송, 저장, 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

제3조(액비의 기준) 법 제2조 제6호에서 “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 한다

1. 충분히 발효되어 가축분뇨 고유의 냄새가 없을 것
2. 입자성 물질이 없이 균질할 것
3. 식물생육이나 환경보전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부산물 비료의 한 비종으로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비료 한 종류이

다.
비료의 공정규격 외에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면 소비자의 혼란은 물론 각 학교에서도 퇴비비료의 개념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지렁이의 예를 들더라도 지렁이도 가축인데 지렁이 분은 지렁이 분변토로 별도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서도 퇴비란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별도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특히 퇴비는 가축분뇨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것 이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려 한다면 법률에서 퇴비 외에 “발효 가축분”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기존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어떻게 타 부처도 아닌 같은 농림부령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저 한심 할 따름이다.

액비 또한 액상비료란 뜻으로 비료관리법에서 4종복합비료로 엮면시비용, 관주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정규격을 설정 관리하고 있고 가축분뇨관련 해서는 가축분뇨 발효 비료(액)으로 분류되어 있어 액비의 기준을 따로 설정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 이다.

비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비료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정의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저 의아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다.

이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생산자를 퇴.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로 국한시키고 있

는 것부터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었던 것이다.

이제 2008년 9월 27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배출물 시설 설치 허가만 받아놓으면 이 법에서 정의내린 퇴. 액비로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어 기존의 비료 관리법과 큰 마찰을 빚을 것이 뻔한 실정이다.

물론 하루 1.5톤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비료 관리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발생량이 아닌 생산량으로 규정하여 하루에 얼마를 생산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지금도 무허가 비료 단속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가 축산 농가를 제외한 많은 비료공장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분뇨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산업은 물론 퇴비 산업과 모든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하였다.



협회 소식

제 4차 정기총회 안내

일시 : 2007년 2월13일12:00

장소 : 대전 유성 리젠드 호텔

위 내용과 같이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오니 회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 해 복 많이 받으세요